

서울시보

Hi Seoul
SOUL OF ASIA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2961호 2010. 02. 22.(월)

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북서울공의숲 전망대

기관의 장		공 람																	
선 람										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홍보기획관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 731-6111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0-407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입법예고 2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-407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0년 2월 22일
서울특별시

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 - 가.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4조)
 - 디지털미디어시티 장기발전 계획 수립·시행 및 홍보 마케팅 사업
 - 디지털미디어시티 산학협력 연계 사업
 - 입주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
 -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의 유지 관리 및 콘텐츠의 지속적 갱신
 -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
 - 서울시 소유의 선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·운영
 -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위탁하는 사업
 - 나. 재단 이사회 규정을 둠(안 제8조)
 -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,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
 - 다. 재단의 운영재원에 관한 규정을 둠(안 제13조)
 -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출연금
 -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
3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투자유치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3층, 우편번호 100-75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유치담당관(전화 : 02)2171-2796, FAX : 02)2171-2799, E-mail : leaving79@seoul.go.kr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